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$\left[\begin{smallmatrix} 2015. & 10. & 13 \\ \mathbf{\Sigma}\mathbf{d} & \mathbf{M}3250\mathbf{\hat{z}}\end{smallmatrix}\right]$

일부개정 2023. 7. 13 조례 제3873호 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 일부개정 2025. 5. 13 조례 제4048호 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연공원법」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·관리 및 활용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3. 7. 13〉
 - 1. "지질공원"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·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「자연공원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 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.
 - 2. "지질명소"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, 경관적 가치, 역사·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.
 - 3. "지질공원 위원회"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· 심의·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군수의 책무) 연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,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7. 13〉
- 제5조(군민의 책무) 연천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

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 · 관리 및 활용

- 제6조(관리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
 - 2.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지질공원의 학술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,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
- 제7조(지질공원의 관리·운영)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·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안내시설)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)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,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·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지질공원해설사 운영)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·교육·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·활용할 수 있다.
 - 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,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협력체계 강화)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,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·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.

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3장 지질공원위원회

- 제12조(설치)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질공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
 - 2.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(性)이 6/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
 - 2.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3.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, 교육,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
 - 4.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
- 제1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.

-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이 하고,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.
- 제19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연천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- 제2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그 밖의 사항

- 제21조(전담기구 설치·운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
 - 2.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
 - 3.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
 - 4.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·공동사업의 추진
 - 5.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
 -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22조(재정지원)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·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

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. 7. 13 조례 제3873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5. 5. 13 조례 제4048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